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8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	2
IV. 참고자료	8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8.
3. 회부연월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 금지 규정 신설(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개정안은 ①실증특례 사업 및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②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며, 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u>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신 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 제1항 및 제90조제13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

현행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하거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¹⁾.

또한, 현행법은 실증사업자가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이외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⑬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고³⁾, 같은 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에 따라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그 행사로 발생한 금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게 되면,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⁵⁾⁶⁾.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안 제140조의2제1항은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당 계좌”라고만 지칭할 경우 어느 계좌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지정계좌”, “손해배상금전용계좌”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정안의 압류 금지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5)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1931 판결]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당 금원의 연원이 압류금지채권인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를 토대로, 규제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마련 등 개별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6개 법률에 대한 일괄정비를 추진 중인 사항으로([참고자료] 참조), 관련 개정안⁷⁾이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7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87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8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9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9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189호)

IV. 참고자료

1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및 개정안 마련 경과

①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개요 (행안부)

-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대규모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제정·운용

*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로 가입을 강제

- 보험의 핵심내용* 누락 및 미비한 문제점 존재하여 평가근거 법령조항 신설('21.6.10. 시행) 및 '22년부터 평가·정비계획 수립**

* ① 적정보상한도, ② 가입확인 및 점검 체계, ③ 미가입자 제재체계,

④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 ('22) 47종 (45개 법률) -> ('23) 58종 (59개 법률) → ('24) 64종 (65개 법률)

② 손해배상청구권 압류금지 규정 (안) 마련 경과

- (행안부 개선 권고) '24년도 평가 결과, 규제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

- (일괄정비: 법제처 주관) 규제샌드박스 법률 8개 중 6개*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은 의원발의('24. 10.) 완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상품 특성상 손해 미발생 사유로 제외

- 소관부처 의견수렴 ('24.12. ~ '25.2.) 및 정비안 사전 합의('25.2.)

< 일괄정비 대상 법률 >

법률	소관부처(소관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부 (도시경제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기부 (디지털산업제도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기부 (특구정책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